

특정 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영양군 대형공사장 기동감찰 -

2019. 8.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단위 : 천원, 명)

일련 번호	소 관	건 명	처 분 요 구		
			처분종류	재 정 상 조치금액	신 분 상 조치인원
1	○○○○과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시정	감액 27,732	
2	○○○○과	☆☆☆☆☆☆센터조성사업 부적합 단열재 시공 등 추진 부적정	시정	감액 12,339	
3	○○○○과	영양군 ^^^^ 건립공사 보조금 집행 부적정	주의	-	훈계1
4	○○○○과	영양지구 √√√√√√√√ 개발사업 건설사업 관리기술자 배치 부적정	주의	-	훈계2
5	○○○○과 ○○○○과	건설공사 품질관리업무 추진 부적정	주의	-	훈계2

2. 신분상 조치인원 명세

연번	제 목	관 련 자			문 책	비 고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1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과				
2	☆☆☆☆☆☆센터조성사업 부적합 단열재 시공 등 추진 부적정	○○○○과				
3	영양군 ^^^^ 건립공사 보조금 집행 부적정	○○○○과			훈계	
4	영양지구 √√√√√√√√ 개발사업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 부적정	○○○○과			훈계	
5	건설공사 품질관리업무 추진 부적정	○○○○과 ○○○○과			훈계 훈계	

3. 처분요구일람표

- 1)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시정) 4

- 2) ☆☆☆☆☆센터조성사업 부적합 단열재 시공 등 추진 부적정 (시정) 7

- 3) 영양군 ^^^^ 건립공사 보조금 집행 부적정 (주의) 12

- 4) 영양지구 ∇∇∇∇∇∇ 개발사업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배치 부적정 (주의) 14

- 5) 건설공사 품질관리업무 추진 부적정 (주의) 17

일련번호	1	감사자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감액	재정상 조치금액	27,732천원
수감부서(처리부서)	○○○○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영양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영양군 ○○○○과에서는 다음 [표1]과 같이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표1] 사업현황 “생략”

1. 정산항목에 대한 물가변동액 반영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절 2항의 약정에 따르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료 등 7개 정산항목은 [표2]와 같이 「건설사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 등의 규정에 따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실제로 지급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 7개 정산항목은 정산 시 이미 물가상승분이 반영되므로 확인된 실적 정산 금액에 물가상승분을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없다.

[표2] 계약금액의 정산항목 및 규정

정산항목	관 련 법 령
국민건강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국민연금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퇴직공제부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 제6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
환경보전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물가변동액을 반영하면서 [표3]과 같이 국민건강보험료 등 7개 정산항목에 대한 물가상승분 25,238천 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였다.

[표3] 정산항목 물가상승분 반영 현황

(단 위 : 천원)

사 업 명	회	물가상승분 반 영 액	정산항목 제외 물가상승분 반 영 액	정산항목 물가상승분 반 영 액	비 고
계		418,374	393,136	25,238	
◇◇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1회	235,517	222,526	12,991	
	2회	182,857	170,610	12,247	

자료 : 영양군 제출자료 재구성

2. 가설창고 정산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의 규정에 따르면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설계변경을 할 수 있고,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물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당초 설계에 공사물량 및 공사자재 등이 과다 산정되었거나 현장 여건의 변동 등으로 설계를 변경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를 변경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공사현장 내 가설창고 180㎡를 설치하는 것으로 실시설계에 반영하였으나 실제는 143㎡만 설치하였으므로 미시공 면적 37㎡를 정산하여 2,494천원(제경비 포함)을 감액하여야 하는데도 감사일 현재까지 설계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위 '1'과 '2'를 종합해 보면 설계 변경하여 감액하여야 할 공사비 27,732천원(제경비 포함)이 감액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영양군수는

- ① 과다 계상된 사업비 27,732천원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	감사자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감액	재정상 조치금액	12,339천원
수감부서(처리부서)	○○○○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센터조성사업 부적합 단열재 시공 등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영양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영양군 ○○○○○과에서는 2016. 12. 9. (주)♠♠건설 b b b 과 공사계약 (5,173백만원)을 맺고, 2016. 12. 16. 착공하여 2019. 11. 2. 준공예정으로 ☆☆☆☆ ☆☆센터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공 사 현 황 “생략”

1. 부적합 단열재로 변경 시공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은 아래 [표1, 2]와 같이 열관류율 기준 또는 단열재 두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

(단위 :W/m²·K)

지역			중부1지역 ¹⁾	중부2지역 ²⁾	남부지역 ³⁾	제 주 도
건축물의 부위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150 이하	0.170 이하	0.220 이하	0.290 이하
		공동주택 외	0.170 이하	0.240 이하	0.320 이하	0.41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210 이하	0.240 이하	0.310 이하	0.410 이하
		공동주택 외	0.240 이하	0.340 이하	0.450 이하	0.560 이하

※ 영양지역은 중부 2지역 적용

[표2] 단열재 등급별 허용두께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중부2지역)			
			가	나	다	라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90	225	260	285
		공동주택 외	135	155	180	20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30	155	175	195
		공동주택 외	90	105	120	135

또한, 단열재의 등급분류는 단열재의 열전도율의 범위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며, 경질우레탄폼보온판은 “가” 등급으로 분류되며 KS M3809 표준 규정에 따라 열전도율 **0.034W/mK이하**의 범위를 충족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영양군 ○○○○과에서 산림문화누림센터 구곡관 거실의 외벽 외단열재로 위 시설기준에 적합한 고가의 84T 고밀도압축패널¹⁾(규격 : 84mm×805mm×400mm) 653m²(170,000원/m²)를 당초 설계에 반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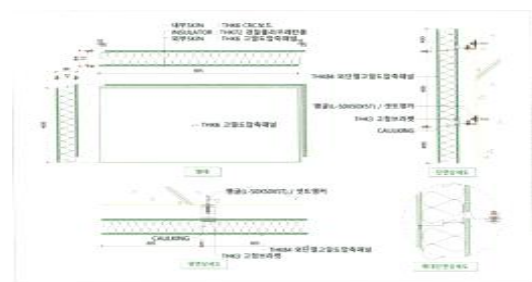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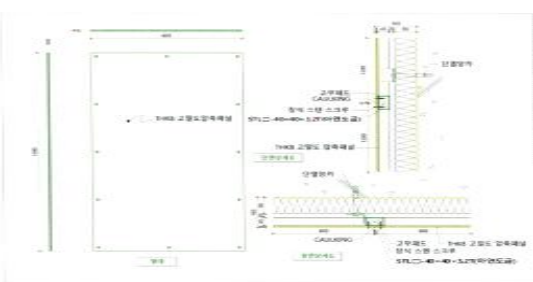
따라서,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용역 책임기술자는 설계에 반영된 단열재가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의 열관류율 기준 또는 두께기준을 만족하는지를 검토 후 시공하는 것이 적정하다.

그런데도, 시공사는 ☆☆☆☆☆센터 구곡관에 반영된 고밀도압축패널 653m²가 단순히 중부 2지역(영양군) 단열재 두께 기준(90T)을 만족하지 못한

1) 고밀도압축패널과 우레탄을 발포처리 공정을 거쳐 마감재와 단열재가 일체화되는 제품

다는 사유로 2019. 5. 16. 아래 [그림1]과 같이 시공자재와 공법을 변경 요청하였으며,

[그림1] 단열재 변경계획

구 분	당 초(마감재와 단열재 일체시공)	변 경(마감재와 단열재 분리시공)
접합방식 도면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F°F°F은 위 건 실정보고가 접수되면 당초설계에 반영된 고밀도 압축패널 자재가 설계기준의 열관유율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면밀한 검토없이 시공사가 제출한 서류가 타당한 것으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2019. 5. 16. 영양군 ○○○○과로 제출하였다.

위 시공사는 마감재와 단열재를 분리 시공하는 실정보고서를 2019. 5. 28. 승인받고 아래 [그림2]과 같이 두께 90T 단열재 456㎡를 현장에 반입하여 시공완료 하였다.

[그림2] 단열재 시공사진

단열재 시공사진1	단열재 시공사진2
	

이에, 감사기간중 위 현장을 확인결과, 시공 완료된 단열재는 제조사가 확인되지 않고 KS제품이 아니며 반입된 자재에 대한 검사시험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도, 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F°F°F은 시공사가 신청한 자재 공급원 승인 신청서를 “설계기준(KS품 등)에 적합하므로 승인함”으로 기재하고 2019. 6. 13. 그대로 승인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감사일 현재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부적합한 단열재 456㎡가 구곡관 외벽에 시공되는 등 사업추진에 걱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2. 정산 항목에 대한 물가상승분 반영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절 2항의 약정에 따르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료 등 7개 정산항목은 [표2]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 등의 규정에 따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실제로 지급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 7개 정산항목은 정산 시 이미 물가상승분이 반영되므로 확인된 실적 정산 금액에 물가상승분을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없다.

[표2] 계약금액의 정산항목 및 규정

정산항목	관 련 법 령
국민건강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국민연금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퇴직공제부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 제6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
환경보전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2회에 걸쳐 물가변동액 253,228천원을 반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7개 정산항목에 대한 물가상승분 12,339천원을 과다 계상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영양군수는

- ① 과다 계상된 사업비 12,339천원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고
부실 시공된 단열재는 품질관리규정에 맞게 재시공하시기 바랍니다.
- ② 또한, 시공사 및 현장대리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행정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3	감사자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처리부서)	○○○○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영양군 〰〰〰〰〰〰 건립공사 보조금 집행 부적정
소 관 청 영양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영양군 ○○○○과는 “영양군 〰〰〰〰〰〰 건립공사”를 국비보조금을 5,320백만원을 받고 군비 1,950백만원을 자부담하여 총사업비 7,270백만원으로 아래 [표] 와 같이 2017. 12. 21. ‘(주)⑧⑧⑧종합건설 ☆☆☆’과 계약 하고 2020. 5. 18.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표] 공사현황 “생략”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되어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설계도서 상 ^ ^ ^ ^ ^ ^ 남측 인접대지 경계는 흙막이와 경사지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영양군 ○○○○과에서는 ^ ^ ^ ^ ^ ^ 건립과 무관한 군계획도로인 ‘소로1-4호선’ 개설공사의 사면 안정에 필요한 옹벽 설치를 위한 설계용역비 20백만원 및 공사비 378백만원, 편입부지 보상비 73백만원 등 총 471백만원을 상기 사업비로 집행하여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였다.

조치할 사항 영양군수는

- ① 보조사업 관련 법령에 대한 업무연찬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② 관련자들은 「경상북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4	감사자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처리부서)	○○○○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영양지구 √√√√√√√√ 개발사업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
부적정
소 관 청 영양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영양군 ○○○○과에서는 “영양지구(입암면) √√√√√√√√ 개발사업”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영양지구(입암면) √√√√√√√√ 개발사업 건설사업
관리용역”(이하 “영양지구 √√√√√√√√ 건설사업관리용역”이라 한다.)을 다음 [표
1]와 같이 추진하고 있다.

[표1] 사업현황 “생략”

위 관서에서는 위 사업 ‘공사기간 연장(국비예산 지연 등에 따른 연장)에 따
른 용역기간 변경(증 471일)’의 사유로 당초 용역비 720,200천원에서 975,613천원
으로 255,413천원을 증액하는 “영양지구 √√√√√√√√ 건설사업관리용역(총괄
2회)” 설계변경을 2019. 4. 1. 시행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용역계
약 일반조건」 제6절 3.에 따르면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상주기술인과 기술지원기술인으로 구분하여 배치하되, 해당공사의 규모 및 공종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하며, 발주청은 현장 실정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414호)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발주청은 해당 공사내용 및 공사진척상황, 연도별 공사비 집행 규모 등 현장실정에 따라 기술자 배치계획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등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계획의 기술자수를 조정·배치하여야하고, 이 경우 상주기술자는 최소 1명을 배치하여야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발주청은 해당 공사의 규모 및 공종 등을 고려하여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를 배치하여야하며 해당 공사내용 및 공사진척사항, 연도별 공사비 집행 규모 등 현장실정에 따라 이를 조정·배치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표2]와 같이 “영양지구(입암면) VVVVVVVV 개발사업 연차별 투자계획”이 변경되었으면 공사진척사항 및 연도별 공사비 집행규모²⁾ 등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조정·배치(41.300인·월 → 34.742인·월)함이 타당했음에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표2] 영양지구(입암면) VVVVVVVVVV 개발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총사업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당 초	9,800	571	3,800	3,800	1,629	-
변 경	9,800	571	3,800	1,714	1,543	2,172
증 감	-	-	-	감2,068	감86	증2,172

자료 : 영양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공사추진 사항 및 연도별 공사비 집행규모에 따라 적정하게 조

2) 2018년도는 사업예산이 계획대비 45.1%만 투입

정·배치하였을 경우 증액이 불필요하였을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107,200천원³⁾(제 경비 포함)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영양군수는

- ① 건설사업관리 업무연찬으로 사업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② 관련자들은 「경상북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3) 2018년도 건설관리기술자 2인(고급1, 중급1) 배치에서 건설관리기술자 1인(고급1) 배치 시 산출한 용역비

일련번호	5	감사자	시설6급 박준희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2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처리부서)	○○○○과 ○○○○과	처분요구일자	2019.8.	회신기일	2019.10.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건설공사 품질관리업무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영양군
관 계 부 서 ○○○○과, ○○○○과
내 용

영양군 ○○○○과, ○○○○과에서는 아래 [표1]과 같이 ‘ㄴㄴㄴ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공사’ 등 3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표1] 공사현황 “생략”

1. 건설공사 품질시험계획 승인절차 미이행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90조에 따르면 총공사비 5억원 이상 토목공사, 연면적 660㎡이상 건축공사, 총공사비 2억원 이상 전문공사에 대하여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득한 후 착공 전 발주자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영양군 ○○○○과에서는 아래 [표2]와 같이 ‘ㄴㄴㄴ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등 2건의 공사의 경우 품질시험계획서만 제출했을 뿐 그 내용이 관련 규정에 미비함에도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확인 및 승인한 사실이 없고, ○○○○과에서는 품질시험계획서가 미제출 되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표2] 품질시험계획수립 부적정 등 현황 “생략”

2. 건설공사 시험실(장비) 미설치

「건설기술 진흥법」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53조에 따르면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때 건설업자는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를 고용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시행규칙 별표5>

공사분류	공사규모	시험장비	시험실 면적	품질기술자 배치기준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1000억원 이상, 연면적 5만㎡ 이상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검사장비	50㎡ 이상	특급1명, 중급2명 이상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500~1000억원, 연면적 3만~5만㎡ 이상		“	고급1명, 중급2명 이상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100~500억원, 연면적5천~3만㎡ 이상		20㎡ 이상	중급1명, 초급1명 이상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2~100억원		“	초급1명 이상

그런데도, 영양군 ○○○○과에서 추진 중인 ‘능능능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공사’등 2건의 공사는 품질기술자는 배치하였으나 시험실(장비)을 미설치하고, ○○○○과에서 추진 중인 ‘:: :: :: :: :: 신축공사’는 품질기술자를 미배치하고 시험실(장비)을 미설치하는 등 품질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건설공사 품질관리는 장·단기적으로 건설공사의 안전확보, 목적물의 성능보장과 내구성 확보 및 사용자의 안전 확보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이에 따라 관련법으로 건설공사 품질관리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 영양군 ○○○○과, ○○○○과에서는 품질관리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영양군수는

- ① 건설공사 품질관리에 대한 업무연찬을 통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② 관련자는 「경상북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